

수입개방과 낙농육우산업

본고는 최근 수입개방 압력에 의한 정부의 쇠고기 및 유제품 수입시도로 낙농육우산업이 일대 위기에 봉착한 점을 감안, 낙농육우산업의 실상파악과 당면한 해결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수입개방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코자 하였다.

쇠고기 및 유제품 수입개방은 낙농육우산업의 포기로 간주할 수 밖에 없으므로 낙농육우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수입개방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개방전 선행대책이 마련되도록 생산자의 단합된 힘이 절실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고에 “수입개방과 낙농육우산업”에 대한 기사를 게재, 현황과 선진국의 예, 수입개방과 낙농육우산업, 쇠고기 수입 및 유제품수입이전의 선행과제에 대해 게재한다.

— 차례 —

1. 낙농육우산업의 현황

가. 한우(육우업)

나. 낙농업

다. 농축산업으로서의 사회경제적 위치

2. 선진국의 낙농육우산업 보호정책

선진국의 낙농산업 보호조치 예

3. 수입개방과 낙농육우산업

가. 수입 추진동향

나. GATT협정에 의한 농업보호의 실태

다. 수입개방의 문제점

4. 쇠고기 및 유제품 수입이전의 선행 과제



1. 낙농육우산업의 현황

가. 한우(육우업)

- 한우는 우리 민족의 얼이자 문화이다.
 - 우리 민족이 한반도에 정착하여 농경문화를 기반으로 나라의 터전을 이루면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우는 우리 민족과 애환의 역사를 같이하고 있다.
 - 대부분의 농가에서 한우를 농사용 역우로 사육하였고 또 환금성높은 재산으로서 한우를 길러 급박한 금전지출의 경우에 대비하여 왔다. 현재도 전체 농가의 절반 정도가 한우를 사육하고 있고, 한우가 육류 공급원이라는 소박한차원 이전에 농가의 가장친숙한 애축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한우는 우리나라 기후풍토에 적합한 우리 고유의 소품종으로서 국가적인 귀중한 자원이며 주체성을 가진 가축이다. 축산 선진국일수록 그나라 고유의 소를 보호하고 개량 발전시켜 보호하고 있으며 이들 나라는 흥하고 있는 산교혼을 보여주고 있다.
 - 상업농시대로 접어들어 축산업도 점차 전업, 기업화추세로 돌입하면서 양계업, 양돈업은 이제 전, 기업화 단계에 이르렀고 아직도 한우 사육만은 농가부업으로서 유일하게 존속되고 있다. 농가호당 평균 사육두수는 2두 정도고 4두 이하를 사육하는 농가는 전체 한우 사육 농가의 93%에 해당한다
 - 농가에서 농산부산물 위주로 한우를 사육하여 농가소득을 올리려고 하는것은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농촌 실정에 비추어 크게 장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공통된 주장이다.
- 한우도 세계적인 육용우로 개량할 수 있다.
 - 한우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이 조성되어 지금까지의 역용우 위주에서 육용우로 착실히 개량을 시도해 나가면 세계적인 맛을 자랑하는 우수 육용우로 전환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예로 일본의 화우는 우리 나라 한우를 가져다 오늘날의 일본소로 개량 발전시킨 대표적인 표본이다.
- 한우 사육이 감소하고 있다.
 - 쇠고기의 국내 자급을 목표로 한우사육을 장려하면서 사육두수가 계속 증가하였으나 생축 및 쇠고기 수입에 기인한 '85 소값파동이후 사육두수는 감소 추세에 있다.
 - 특히 미국의 강압에 의한 쇠고기 수입개방 보도가 있는 이후부터 소값파동의 영향으로 농가의 소사육 의욕은 극도로 저하되어 암소를 번식에서 탈피하여 비육으로 전환하는 등 장기적인 번식기반 유지에 우려를 갖을 만큼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우 사육 동향

(단위 : 호 두)

구 분	'81	'82	83	'84	'85	'86	'87	'88.3
사육 호수	858,250	895,827	971,152	1,036,806	1,047,573	990,720	854,269	827,129
사육 두수	1,311,725	1,525,644	1,940,142	2,317,692	2,553,449	2,370,011	1,923,121	1,758,781

나. 낙농업

- 우리나라 낙농업은 60년대부터 정부의 낙농 진흥정책에 힘입어 본격화되었고 70년대부터 적극적인 소우 도입과 목장조성, 선진국으로부터 유가공처리 시설의 도입설치, 나아가

소비홍보의 노력으로 크게 신장하였다. 20여년 남짓한 짧은 낙농역사임에도 다른 어느 산업부문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괄목할만한 급성장을 하고 있으나 아직 산업 초기단계에 이르고 있다.

- 젖소 사육두수는 65년도에 비해 71배로 증가하였고 사육 농가수는 31배로 증가하였다. 소값 파동이후 사육농가수는 계속 감소추세에있고 호당 평균 사육두수는 12.7두로 증가추세에 있다.

젖소 사육 동향

구 분	'86(A)	'70	'75	'80	'85	'88.3(B)	B/A
사육두수	6,612두	23,624	85,542	206,851	390,135	467,817	71배
사육호수	1,210호	3,126	9,415	22,122	43,760	36,932	31
호당두수	5.5두	7.6	9.1	9.4	8.9	12.7	2.3

- 원유의 생산은 '87년 현재 1,365,487톤으로서 154배 증가하였고 우유소비는 1,376,512톤으로서 131배 증가하였다. 국민1인당 우유 소비량은 32.1kg로서 크게 신장하였으나 선진국 우유 섭취량에 비해 아직도 미비한 수준이다.

우유 생산 및 소비량추이

구 분	'65	'70	'75	'80	'85	'87	'87/'65
생산량	8,851M/T	47,706	160,338	452,327	1,006,103	1,365,483	154배
소비량	10,474M/T	49,688	162,435	411,809	957,742	1,376,512	131배
1인당	0.3kg	1.6	4.6	10.8	23.6	32.1	107

각국의 국민 1인당 우유 소비량

국 명	섭 취 량	국 명	섭 취 량
뉴질랜드	613kg	서독	382.3
프랑스	506.7	스웨덴	357.2
스위스	505.8	네델란드	285.4
덴마크	497.4	미국	262.8
영국	462.6	일본	70
캐나다	391.2	한국	32.1

- 젖소 사육규모는 아직 영세한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88 3월 현재 전체 낙농가의 71.6%가 젖소 14두 이하 사육 규모이다.

사육 규모별 가구수 분포 현황

('88.3 현재)

합 계	1-14두	15-29두	30두 이상
36,932	26,448	8,155	2,329
(100.0)	(71.6)	(22.1)	(6.3)

- 국토의 66%이상이 산지인 자연여건을 고려할때 국내부존자원을 활용하여 국민 식량을

확보하고 국민소득향상에 따라 국민이 원하는 우수 식품을 생산하는 면에서 낙농업은 1차산업중 주요 장려산업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국토 이용 현황('84기준)

(단위 : 천ha)

구분 나라	국토면적(A)	경 작 면 적		B/A	임 야	기 타
		경 지	초지(B)			
한 국	9,912	2,144	81	0.8%	6,524	1,249
프 랑 스	54,563	18,812	12,385	22.7	14,603	8,763
서 독	24,428	7,437	4,607	18.9	12,328	5,056
이 태 리	29,402	12,233	4,930	16.8	6,410	5,829
미 국	916,660	189,915	241,467	26.3	265,188	220,090
아르헨티나	273,669	35,600	142,800	52.2	59,800	35,469
브 라 질	845,651	72,250	165,000	19.5	565,280	40,121
호 주	761,793	48,108	438,108	57.5	106,000	169,234

자료 : 농림수산부, 농림수산 주요통계 '87. 한국은 '85기준

- 우유의 소비 형태는 선진국일수록 가공유 위주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시유 위주로 되고 있어('87년도 전체 납유량중 80%가 시유임)정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가공유 위주로 제품개발이 시급한 실정이고 제품 개발과 소비홍보여하에 따라 잠재적 수요가능성은 많은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동일소득 수준에서의 한일간의 1인당 우유 소비량 비교

소 득 수 준	450-530불	1900-2000불
일 본	연 도	1960
	소비량(A)	22.3kg
한 국	연 도	1975
	소비량(B)	4.6kg
비 율	A : B	4.81 : 1

- 낙농업의 당면과제로 집유선 고정조치에 따른 문제점 시정을 위한 집유제도 개선과 원유 검사방법의 개선, 원유가격 결정체계의 개선등이 요구되고 있다.

다. 농축산업으로서의 사회 경제적인 위치

- 농축산업은 국민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인류 경제활동의 한 부문으로 인류사와 더불어 존속되어야 할 산업으로서, 농축산업이 와해되는데는 순간적이지만 다시 기반을 조성하기에는 수십년 혹은 수백년이 소요되는 장기전략산업이다.
- 농축산업 부문이 공급하는 식량은 언제라도 무기화될수 있으며, 비상시는 물론이고 평화시에도 국방, 외교, 경제마찰, 정치문제등의 이유로 국내 자체생산분을 제외하고는 공급원이 막힐 가능성이 있다.
- 역사적으로 농업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던 부족, 민족, 국가가 한때는 크게 흥하였으

나 자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멸해 버린 교훈이 있다.

- 경제 총량의 확대만이 국가발전의 척도로 보기 어려운것이 사실이고 오늘날 많은 선진국들이 농축산업을 국가경영의 원대한 전략의 하나로 삼고 있는것은 농축산업을 국가발전의 필요조건임을 시사해주는 사례이다.
- 농축산업의 방치는 국토의 황폐화 야기와 유효자원의 활용을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 우리나라 전 인구의 1/5이 농업에 종사하는 실정이므로 농축산물의 시장개방은 엄청난 인력의 실업초래와 대량 실업으로 인한 사회불안 및 정치불안 발생이 가능하다.
- 따라서 농축산업과 식량은 국가전략 산업이어야 한다. 정책은 먼저 식량의 자급목표 설정과 국토와 부존 자원을 어떻게 활용 할것인가하는 정책목표를 설정, 제시하여야 하고 식량생산 담당자의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 실업인구를 떠맡을 것인가 혹은 농업에의 취업안정으로 나라안정을 꾀할것인가의 정책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2. 선진국의 낙농육우산업 보호정책

- 선진국 농업일수록 자국의 축산업 특히 낙농육우산업에 대한 보호정책은 각별하다. 각국은 대내외적으로, 각종 가격지지정책 및 국경보호조치를 통해 자국의 소산업, 그중에서도 낙농업은 보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조수준도 농업내부의 타분야에 비해 월등히 높다.
- 각종 보조 및 지원시책에의해 낙농의경우 국내수요를 초과하는 화잉생산을 유발케 하고, 과잉 제품의 해소를 위해 수입시에는 각종 과징금제도를, 수출시에는 보조금 제도를 실시하여 국내 소비의 위축과 국제시장 가격의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 특히 우리와 유사한 일본의 경우 세계에서 경제1위이면서도 쌀과 유제품의 시장은 개방을 불허하고, 쇠고기의 경우도 4년전에 체결된 “쇠고기 수입 쿼타 협정이 올 3월에 만료되었음에도 시장개방을 거부함으로써 연기하였고 수입쿼타제를 일방적으로 책정 시행하고 있다.

주요국의 생산물별 생산자 보조수준(1979-1981평균)

(단위 : %)

국 별 생산물별	미 국	캐나다	EC ¹	호 주	NZ ²	일 본
낙농제품	48.3	66.5	68.8	20.8	18.0	83.3
소 맥	17.2	17.6	28.1 ³	3.4	-8.2 ⁴	95.8
곡 물	13.1	13.3	27.9	2.9	5.3	107.1
우 육	9.5	13.1	52.7	4.0	12.5	54.9
돈 육	6.2	14.5	21.7	2.7	7.4	14.0
계 육	6.3	25.7	16.4	2.5	4.7	20.5
설 탕	17.1	12.5	25.0	-5.0	na ⁵	48.4
쌀	5.4	na	13.6	14.4	na	68.8
양 육	na	na	na	3.1	18.2	na
면 화	na	na	na	3.9	16.3	na

대 두	6.9	na	36.2	na	na	108.1
평 균	16.0	23.9	42.8	4.7	15.5	56.1

자료 : OECD "National policies & Agricultural Trade 1987)

- 1 EC 10개국 (벨기에, 서독,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의 평균임.
- 2 뉴질랜드
- 3 보통소맥과 연질소맥
- 4 마이너스 값은 생산자에 대한 세금을 뜻함.
- 5 Not Available

주요국의 유제품자금율(1979-1980 평균)

국 별 제품별	미 국	캐나 다	EC	호 주	뉴질랜드
버 터	112	98	118	123	608
치 즈	100	94	106	148	377
탈지분유	150	216	126	137	5,310

자료 : OECD "National policies & Agricultural Trade 1987

- 대만 또한 미국 농축산물 수입을 우려하는 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GATT협정 제 1조 2항을 들어 육류에 대한 미국의 시장개방요구를 거절하고 있다.

선진국의 낙농산업 보호조치 예

가. 미 국

1) 주요 지원 정책

- 미국 농업소득의 25-35%를 정부의 직·간접보조금에 의해 총당
- 농가폐업 보조금지급 (86.4~87.9) 약 1조4천9백억원
- 보증 가격 제도 실시
 - 상품 신용공사(CCC)에서 잉여 유제품(치즈, 버터, 탈지분유)을 적정 가격으로 구매 (연간 잉여유제품 구매 예산 : 20억불 이상)
- 국내 유제품 여량 처분
 - 상품 신용 공사에서 잉여 유제품을 구매, 학교 급식등으로 무상 공급
- 가격 지지 제도(Price Support Program)
- 연방 우유 판매 명령지도

2) 수입 규제 정책

- 미국의 다자간 무역협정(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의 승인시 전유제품을 수입 물량 제한 품목으로 삼입 조치(1979.7. 카터 승인시)
- 총량 할당을 통한 수입 규제
 - 할당량 이내라도 국내가격 보다 저렴한 수입 가격인 경우에는 상쇄관세(Countervailing Duty)를 적용
- 유제품 수입 할당량 설정 및 특정 수입 규제
 - 대부분의 유제품 수입은 쿼타제에 의해 규제됨. (미농무성 관장)

- 연간 최대 수입 킬로그램은 11만 1천톤
- 품목 : 전지, 탈지분유, 유장분말, 음용유 버터, 아이스크림
- 치즈 수입은 미국 소비량의 약 5% 수준

○ 관세 쿼타제 실시

- 음용유는 연간 3백만 갤론 수입
- 갤론당 0.02달러 부과
- 킬로그램 초과시 : 초과량 갤론당 0.65달러 부과

○ 관세부과

- 버터 : 1파운드당 5.6센트 부과
- 체다치즈 : 12-16%부과
- 스위스 및 에멘탈치즈 : 6.6%부과
- 기타 치즈 : 10%이상부과

3) 유제품 시장 개방도 (1982년)

- 버터 : 0.0%(관세율 4.3-10.7%)
- 탈지분유 : 0.0%(관세율3.2%)
- 치즈 : 4.9%(관세율6.5%-25%)

나. 캐나다

1) 주요 지원정책

- 가격 지지제도 실시(낙농가소득 보장)
 - 목표 가격 설정
 - 유대의 약 14-25%를 보조('83/'84년도 총지급 보조 금액 : 2억8천7백만달러)
- 우유수급 조절 기금 지원
 - 캐나다 낙농위원회의 버터, 탈지분유 구매기금을 연방 정부가 지원 ('84'85년도 : 2천2백만달러)
- 유제품 수출 지원
 - 유제품 수출시 : 창고비, 이자 수송비등을 지원 ('84/'85 : 1천3백만 달러)
- 기타 낙농가 및 소비자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비 지급보조

2) 수입 규제정책

- 유제품 수입 쿼타제도 실시로 수입 규제
 - 대부분의 유제품은 수출·입 허가법에 의거 통제를 받음(부족시를 제외하고는 임의적 수입제한).
 - 상업용 치즈의 수입 허가량은 연간 20,412톤의 할당량 범위내에서 허용
- 관세부과
 - 대부분의 유제품과 치즈에 대해 제품 파운드당 3-3.5센트 MFN('79)관세부과
 - 버터 : 파운드당 12센트 부과
 - 카제인은 25%의 관세와 파운드당 2.5센트의 물가안정세 부과(단, 호주, 뉴질랜드에 대하여는 무역협정에 의거 12.5%의 관세인하 허용)

3) 유제품의 시장 개방도

- 유제품 시장 개방은 1.1%로 제한

다. 구주 공동체(E C)

1) 주요 지원정책

- 가격 지지제도 실시
 - 농가소득 보장을 위하여 지표가격, 경계가격, 개입가격 설정
 - 개입 가격은 농가 수취 가격 하한선으로서 농가소득 보장선임.
 - 시장가격이 낮을 경우 무제한 매입하여 가격 지지
 - 역내 단일시장 및 가격 설정
 - 역내 관세철폐, 역외 공동관세 설정으로 역내 생산 농가보호
- 유제품 수출보조금 지원
 - 유제품의 국제 가격과 국내 가격과의 차액을 보상하기 위한 수출 보조금 지급
- 약 50여종의 보조금 지급
 - 탈지분유 채고기금, 카제인 제조 및 탈지분유 가공비 보조, 버터 및 크림제조 보조, 학교 급식 보조등
- '86년도 EC총예산중 65%(약 18조 3천억원)가 농업 예산이며 그중 28%(약5조 1천억원)가 낙농부문임.

2) 수입 규제정책

- 수입 부과금 부과
- 가변 과징금 징수
 - 수입 유제품의 경계 가격과 경계가격(지표 가격에서 역내수송비, 조작비를 뺀 가격)의 차액을 가변과징금으로 징수

3) 유제품 시장 개방도

- 버터 : 4.2%(관세 160-311%)
- 탈지분유 : 0.1%(관세104-279%)
- 치즈 : 2.6%(관세193-215%)

라. 일 본

1) 주요 지원정책

- 부족분 지불제도 실시
 - 가공용 원유의 표준거래 가격과 보증 가격과의 차액을 축산진흥사업단을 통하여 농가에 지급
 - 가공용 원유대의 25%를 정부가 직접 지원(매년 약2,820억원)
- 가격 안정 및 수급조절을 위한 "축산 진흥 사업단" 운영
 - 가격 및 수급조절
 - 낙농가 채무보증
 - 가격 지원금 지급
 - 수요 증진사업등 추진
 - 집유 일원화로 낙농가의 거래 교섭력 보호
 - 낙농 기본 정책 확립으로 낙농산업 보호 육성
 - 우유를 주식량으로 간주하고, 안정적 확대 재생산 조건 정비
 - 학교 급식제도화

일본의 가축 및 축산물 가격안정제도

(1986년 4월 1일 현재)

대상 품목	제 도 (사 업)	근 거 법령등	관 계 단 체	보 증 가 격				사 요	
				내 용		85년도 (A)	86년도 (B)		(B)/ (A)
쇠고기	축산물가격 안정제도	축산물가격 안정등에 관한 법률	축산진흥 사업단	화우(거세)	안정기준 가격 (중심가격) 안전상위 가격	1,400 (1,608) 1,820	1,400 (1,608) 1,820	100	가격하락시 안전기준가격으로 매입, 상위가격이 상으로 상승시 출하
				기타우 ()	안정기준 가격 (중심가격) 안전상위 가격	1,120 (1,285) 1,455	1,090 (1,255) 1,420		
유제품	"	"	"	(안정지표 가격)					안정지표가격의 90%로 매입, 104% 이상상승시 입찰로 매도
				버터(원료 1kg)		1,302	1,225	94	
				탈지분유(25kg)		13,140	13,530	102	
				전지가당연유(24.5kg)		8,950	8,950	100	
가공원료유	생산자보급금제도	가공원료유생산자보급금등 잠정조치법	"	보증가격(1kg)		90엔07전	87엔57전	97	부족불지불제도 =부해도
				기준거래가격(1kg)		70엔17전	69엔54전	99	
				보급금(1kg)		19엔90전	18엔03전	91	
				최고한도수량		230만톤	230만톤	100	
육용송아지	육용송아지 가격안정 사업	육용우가격 안정사업 실시요령	중앙및 현 육용 송아지가격 안정기금 협회	보증기준가격 육용송아주 (대상자주) 일령250일-320일 체중260kg-350kg 240kg-330kg		292,000	292,000	100	보조금=(기준가격-규격품의 가격)×보급율
				보급율		9/10	9/10		

- 우유 가격지지 정책 도입
- 낙농 자립 안정 기반 확립
- 우유 생산 광역 경제권 설정 등

2) 수입 규제정책

○ 축산진흥사업단으로 수입 창구 일원화

- 축산진흥사업단은 시장 가격조절을 위하여 7개품목(전지가당연유, 전지분유, 탈지분유, 유장분말, 버터, 버터밀크, 분말)을 수입할 수 있음

- 학교급식, 아동 복지용 탈지분유, 배합사료용 원료등 용도가 한정되어있는 품목은 일 반업자 수입가능
- 고율(25%~35%)관세부과
 - 농축우유 : 30%
 - 탈지분유 : 25%(단 학교급식 및 사료용은 면세)
 - 버터 : 35%
 - 치즈 : 35%(단, 가공용 자연치즈는 면세)
 - 카제인 : 무관세(단, 유사제품은 6.4%부과)
- 유제품 수입 쿼타제도실시
- 3) 유제품 시장 개방도
 - 버터 : 5.4%
 - 탈지분유 : 6.7%

마. 스위스

1) 주요 지원 정책

- 사료 작물 재배 보조금
- 산악지대 낙농보조금 지급(1981년도)
 - 방목 보조금 : 두당 6만원
 - 가축 사육 추가보조금 : 두당 최고 30만원
 - 육종번식 보조금 : 두당 4만원
 - 우유 생산중단농가에 대한 소득 보조금 : 두당 66만원
- 면세조치
 - 일반 낙농가 : 연간 우유생산 8,000kg까지는 면세
 - 산악 낙농가 : 연간 우유생산 20,000kg까지는 면세
- 탈지분유의 농가 이용시 가격의 48%를 정부가 보조
- 농산물가격 안정유지 및 생산자 적정 소득 보장
 - 전지, 탈지분유는 국경조치에 의한 가격 보장
 - 버터는 국내시장 개입에 의해 생산자 보호 : BUTYRA에서 장려금 지급
 - 치즈는 준공의 법인인 USF에서 국내생산 치즈의 대부분을 보증 가격으로 구매 비축관 리(손실은 낙농보호연맹에서 부담)
- 식량자급 및 전시 대비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기본정책으로 고수
 - 모든 농가는 전식량으로 돼지, 소, 말, 닭등을 최소한 1-2두씩 사육하도록 의무화하 고 있음.

2) 수입 규제정책

- 유제품 수입세 부과
 - 국내 유제품 가격 하락시 재정지원을 위한 수입세 부과(정상적인 소비세보다 높게 부과 됨)
 - 치즈 : 100kg당 200프랑(스위스)
 - 탈지분유 : 100kg당 230프랑(스위스)
 - 크림 : 100kg당 420-680프랑(스위스)

- 수입 전매세(버터)부과
 - 수입버터 전매권을 BUTYRA로 일원화
 - 수입품 가격과 국내산 버터 가격과의 차액을 변동세로 부과
- 판매조건 규제
 - 수입전지분유와 산 카제인(Acid Casein)은 국내산 4에 수입품 1의 비율로 판매
 - 카제인은 국내산2에 수입품1의 비율로 판매
- 관세부과
 - 버터 : 100kg 당 20-30프랑(스위스)
 - 치즈 : 100kg 당 20-80프랑(스위스)
 - 카제인 : 100kg 당 20프랑(스위스)
 - 우유와 기타 유제품도 관세 부과
- 수입 쿼타제(원유)실시
 - 원유의 수입은 제네바의 수입 자유지역에 한해서 고정된 수입 할당량으로 제한(일6만 리터)

3. 수입개방과 낙농육우산업

가. 수입 추진 동향

- 정부는 이미 지난해6월경 비밀협약으로 미국의 쇠고기 수입을 결정하고도 농민에게는 농민의 사전승인 없이는 쇠고기를 절대 수입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천명해왔다.
- 특히 지난해 대통령 선거운동시 집권여당은 쇠고기 수입이 농업 전반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의식, 낙농육우산업을 민족생존산업으로 보호육성할 것을 밝히면서 쇠고기수입 불허방침을 공약하였다.
- 대통령선거 직후 쇠고기 수입개방 방침을 밝히자 전국의 양축가들이 분개하여 거센 반대 의사를 표출하기에 이르렀고 농민들은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쇠고기 수입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 농민들은 쇠고기 수입으로 일어날 쇠고기 생산기반의 붕괴와 낙농육우산업의 도산을 막기위해 수입개방전 선행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였고, 이에 정부는 농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사전 안정대책이 선행된후 쇠고기 수입방침을 천명하였다.
 수차에 걸친 공청회와 세미나등을 거쳐 농민의 요구사항과 쇠고기 수입 선행 과제가 제시되었으나, 당초 약속과는 달리 안정대책 마련없이 쇠고기 수입을 시도하려하고 있다.
 더우기 과거 쇠고기 수입시 관광용품센터에서 관광호텔용을 병차하여 일반용품 쇠고기가 둔갑 수입되었던 점을 상기조차 않은채 또다시 수입창구마저 관광용품센터로 이원화하여 수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국내우유소비가 원할해지는 것과 때를 같이 하여 유제품 수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점진적인 관세 인하를 정부는 계획하고 있고, 카제인 유당등 수입 감시 품목 해제하려하고 있다.
 현재까지 연평균 2만여톤 이상의 유제품이 수입되고 있고 금년도 수입량은 증가추세에 있다.

유제품 수입·실적

연 도 별	수 량(톤)	금 액(천불)	비 고
'83	22,336	22,774	○유장분말·유
'84	26,723	24,758	당, 카제인,
'85	23,118	19,991	탈지분유, 전
'86	21,295	24,045	지분유, 버터
'87	22,378	26,810	치즈 등임

자료 : 관세청, 무역통계 월보

나. GATT협정에 의한 농업 보호의 실태

- 농축산물 수입물량의 제한을 허용(예외조항)하고 있다.
 - 협정 제11조2항 : 농산물 또는 수산물에 대하여 다음 목적을 위하여 수입형태의 여하를 불문하고 정부의 조치에 의해 수입제한을 실시하는 것을 허용
 - (1) 판매또는 생산이 허용된 동종의 국내산품 수량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
 - (2) 동종 국내산품의 일시적 과잉 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
- 자국의 초기단계 산업을 보호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제18조(경제개발에 대한 정부의 원조)에 의거 초기 개발단계에 있는 자국 산업을 보호.
- 상기의 GATT협정 이념으로보아도 모든 나라에는 자국의 농산물을 보호하려는 정신이 있음을 알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나라도 농산물 시장을 그들처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은 같은 맥락에 있는것임.

특히 낙농육우산업은 70년대는 기반조성단계, 80년대는 성장초기단계로 개발이 본격적인 단계였으며, 물량의 증가면에 있어서도 이시기에 50% 이상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비면에 있어서도 1987년 현재 국민 1인당 우유소비가 32kg으로 향후 적어도 2-3배의 신장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협정18조에 해당하는 산업으로 규정할 수 있음

다. 수입 개방의 문제점

- 지난 소값파동의 극심한 불황으로인한 피해의식이, 농가의 사육심리를 불안케하여 소 사육을 기피함으로써 생산기반의 붕괴를 초래한다.
 - 특히 한우 사육기반은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하여 수입자유화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고 수입 재개에 의한 기반 붕괴가 뒤 따른다.
- 소 사육기피로 인한 시장 방매 현상과 이에따른 소값하락으로 양축농가의 파탄과 농촌경제의 불황이 초래된다. 소산업 불황은 대체관계 있는 양계, 양돈업의 불황과 사료산업, 농기구산업, 동물약품산업등 관련산업 전반의 불황을 유발한다.
- '85소값파동으로 농가부채 상환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값파동이 재연이 될 경우 농촌의 황폐화가 초래된다.
- 소값하락으로 농가의 소사육 및 번식기피→소사육 두수감소→소값인상 및 쇠고기 공급 부족→쇠고기 수입의 악순환이 초래된다.
- 미국의 압력으로인한 쇠고기 시장 개방시 호주, 뉴질랜드 등의 경쟁적인 개방 압력으로 쇠고기 수입국으로 전락할 우려가 다분하다.
- 쇠고기 시장이 개방될 경우 후속으로 유제품 시장 개방압력이 몰아칠 가능성이 다분하고 현재 진행추세이다.

○ 낙농업의 경우 아직 유치산업 단계에 불과하므로 수입개방이 될 경우, 국내 낙농업은 일시에 도산 될수 밖에 없다.

안정적인 기반 조성이 이뤄질 때까지 낙농은 보호되어야 한다.

낙농육우산업의 수입개방에 앞서 국제협상에서의 적극적이고 단호한 대처는 물론, 국민적인 합의로서 국내 낙농육우산업의 안정적인 육성발전에 노력이 경주 되어야한다.

쇠고기의 수입개방시 자급율전망

년도	년초소사육	우육생산량	우육수요량	1인당수요량	우육자급율
1987	2,807	152.6	152.6	3.6	100.0
88	2,574	144.8	166.8	3.9	86.8
89	2,403	136.8	188.8	4.4	72.5
90	2,222	129.1	212.1	4.9	60.9
91	2,043	122.3	235.3	5.3	52.0
92	1,854	114.9	260.9	5.9	44.0
93	1,661	107.2	282.2	6.3	38.0
94	1,461	98.8	308.8	6.8	32.0
95	1,283	91.4	332.3	7.2	27.5

주 : 관세 20% 가정.

자료 : 허신행, 이철현(수입정책대안별 쇠고기의 수급상황),
"농촌경제" 11권 제1호 1988. 3.

4. 쇠고기 및 유제품 수입이전의 선행과제

낙농육우산업은 생산기반 구조가 취약하고 수입 개방을 강요하는 선진제국에 비해 제도적인 면에서 불리한 경영여건이므로 쇠고기 및 유제품 수입이전에 다음과 같은 선행과제가 반드시 요청된다.

가. 쇠고기 가격 안정대 사업 제도화

○ 내용

- 쇠고기 가격 하락시 농가의 경영위험 부담을 제거하기 위하여 기준 가격 및 등락폭의 하한선 설정
- 하한가(125만원)이하로 하락시 수매비축등 가격안정보장제도

○ 운영

- 생산비 및 적정농가 수익을 보장하는 가격 안정대 설정
- 운영에는 반드시 생산자(단체)가 참여토록
- 수매 비축기능은 생산자단체로 창구를 일원화
- 판매 차익은 반드시 농가환원

○ 자원(촉진기금과는 별도조성 및 운영)

- 정부의 재정출연
- 수입육 판매차익
- 공산품 수출이익의 일부각출
- 기타

나. 송아지 가격 안정 사업제도

- 송아지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수입 감소를 방지하고 번식 기반조성을 위한 가격안정대 설정
- 하한가 이하로 하락시 송아지 가격안정기금으로 차액보전
- 생산비 및 적정 농가수익을 보장하는 선에서 기준 가격을 설정하되 암송아지 우선
- 운영에는 반드시 생산자단체가 참여토록

다. 축산물 수급조절 상설기구 설치

축산물 수급조절상 생산축소 또는 수입이 불가피할 경우 원활히 대처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수입창구 일원화)

- 생산자, 정부, 학계, 업체 대표로 구성
- 구성 및 운영의 법제화(가칭 축산물 가격안정법 제정)
- 수급조절, 가격결정, 수출입관리, 검사 및 소비홍보 등의 제기능 관리

라. 배합사료제도의 개선

○ 현황

- 모든 수입사료곡물은 반드시 사료공장을 거쳐 배합사료 형태로 판매케 되어있어 조사료 위주의 소사료 특수성에 맞추어 농가에서 사료의 자가 배합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제도적으로 불가능함.
- 대두박 수입이 쿼터제로 묶여 수급이 원활치 못하고, 국산 대두박 가격은 수입품보다 비싼 실정이고 국산 대두박도 시중유통이 금지되고 있음.
- 사료곡물 수입쿼터제와 곡류 사용비제한으로 배합사료 제조시 값비싼 강피류나 기타곡물 사용사려
- 알팔파 페렛을 수입하여 배합사료 원료로 사용함으로써 배합사료 가격인상의 요인이 되고 실제 농가에서 원하는 고능력우 조사료로는 이용되지 못함.

○ 대책

- 자가배합 능력이 있는 농가에 대한 단미사료 농가유통의 허용
- 대두박 수입의 자유화 및 국내유통화
- 사료관리법 폐지
- 기수입 알팔파의 농가 배정
- 사료곡물 수입쿼터제와 곡류 사용비제한 폐지

마. 생산성제고를 위한 금융지원확대

○ 현황

- 축산부문에 투입된 양축가 사채규모가 약 1,700억원에 달하고 있고 양축 채산성의 적자 폭이 심화되고 있음.

○ 대책

- 쇠고기 생산시설의 현대화와 적정규모화로 생산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낙농 및 육우 농가의 농기계, 시설, 비육 소우 등의 구입자금을 장기 처리로 지원할 것.
- 금리 : 연 3%
- 기간 : 5년거치 10년 분할 상환
- 재원 : 정부 재정 자금 지원

바. 축산기자재 관세, 부가세 면제

○ 현황

- 과중용 사료 작물 종자 수입시 유채 10%, 강피류 7%, 박류, 어분 10% 등 관세부과
- 낙농기자재인 우유냉각기 15%, 착유기 15%, 목장용 트랙터 20%의 관세부과
- 배합사료 부가세 10%부담
- 축산기자재 매입시 양축가가 관세 및 부가세를 부담하고 있으며, 축산물 판매시에도 매입시 납부한 부가세 및 매입세를 공산품처럼 공제받지 못함.
- 공산품 수출시에는 수입원자재에 부과된 관세와 부가세를 환급받고 있으나 축산물 수출시에는 관세, 기납부된 부가세 및 매입세가 환급되지 않고 있음.

○ 대책

- 타산업과 동일한 세제혜택
- 축산기자재 및 농가 재배용 종자 수입관세 면제
- 배합사료 부가세 면제

사. 국공유림 초지조성후 임대 또는 분양

○ 현황

- 현행 국토이용관리법, 산림법 등 관계법규와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초지조성을 위한 소요자금이 막대하므로 양축 농가의 초지조성 의욕상실과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 저해
- 소규모 농가의 경우 경제성문제로 초지조성은 사실상 불가능함.

○ 대책

-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축산의 안정적 기반조성을 위해 정부에서 초지를 조성하여 양축 농가에게 장기 임가로 임대 또는 분양 실시
- 양축농가가 자력으로 초지를 조성할 경우 진입로, 전기, 용수 개발 등 기반조성사업 지원

아. 상호금융 대출금 금리인하

○ 현황

○ 대출금리 : 14.5% (연)

(타부문)-무역금융 10%

-중소기업진흥기금 5-10%

-일반자금 11.5%

- 양축가에 대한 상호금융 대출 금리가 타산업에 대한 지원 금리 및 일반자금 금리보다 고율이므로 축산물 생산비가 높고 경쟁력 저하됨.

○ 대책

- 양축가에 대한 대출금리를 8%이하 수준으로 인하조정 하여 금리부담을 경감시켜줄것.